

간사화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 위원회와 본회의의 승인을 얻는다.

나.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위원회와 본회의에 보고한다.

해외연수 귀국 보고서

연수 개요

○ 목 적

-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선진 지방의회 제도와 운영실태를 직접 체험하고,
- 지방도시의 주요시설 등을 견학함으로써 얻은 견문으로,
- 마포구의회의 내실화를 기하고,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함.

○ 기 간 : 1996.6.13~6.22(9박 10일)

○ 주요 방문도시

국 명	도 시 명	방문기관및시설	주요 면담자
미 국	로스앤젤레스	L.A COUNTY 쓰레기 매립장	정 문 섭 박사 L.A 시장 RICHARD J. RIORDAN
	"	L.A 시 의 회	
캐 나 다	토 롬 토	토론토시 하수처리장	CORDELL W. SAMUELS 시의원 WALLEEN
	"	토론토시 의회	

○ 연수단 : 17명(의원 14명, 직원 3명)

- 단 장 : 한현덕 부의장
- 부 단 장 : 이천규 운영위원장
- 총 무 : 채재선 의원
- 단 원 : 권오범, 김동휘, 김성환, 김유현, 김종열, 심재창, 박영길, 유남렬, 유동균, 이용원, 홍성환 의원
- 직 원 : 손동수 사무국장, 현윤기, 김동수

미 국 편

【미국의 지방자치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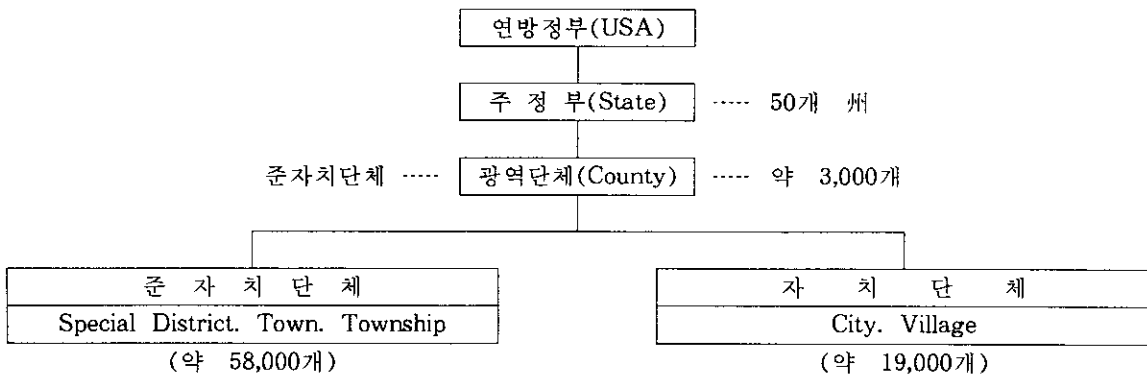
미국의 국토 총면적은 938만km<sup>2</sup>이고 인구는 2억 3천 6백만명이다. 국토가 워낙 광대하기 때문에 기후와 주민의 기질 및 지방제도 등이 다양하다. 미국은 연방국가로서 50개주와 약간의 연방직할지(Washington D.C,

Puerto Rico 및 남태평양제도 등)로 구성되어 있다.

연방은 연방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만을 가지고 있는데 반하여 주(州)는 연방헌법 또는 주헌법에 금지되지 아니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지방제도의 구성에 대한 권한도 각 주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제도가 주에 따라 다양한 것이 특색이다. 또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정도 식민지시대에는 영국의 제도를 답습하였으나 독립후 삼권분립원리 등의 정치적 영향을 받아 각 주별로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하였다.

그래서 미국을 각종 지방자치제도의 전시장이라고도 하는 바 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 특성을 요약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미국의 행정단위는 자치단체와 준 자치단체가 있다.

자치단체는 주정부로부터 현장을 부여받은 법인체로서 City, Village와 법인화된 Town이 그 예이고 준자치단체는 주정부로부터 현장이 부여되지 아니한 법인격이 없는 지방단위로서 County, Special District, Town, Township이 이에 해당된다. 자치단체는 주민의 발의와 주민투표에 의하여 창설되는데 비하여 준자치단체는 주정부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창설된다. 그러나 자치단체와 준자치단체의 구별은 현실적으로 점차 의의를 상실하고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County와 Township이 주민들의 요청에 의하여 창설되어 왔고 Special District의 창설에도 주민들의 의사가 고려되고 있으며 준자치단체도 일선기관으로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와 같이 지방자치구역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지방행정단위의 종류가 지역에 따라 다르다.

County는 미국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전통적인 지방행정단위이며 기초자치단체인 Municipality는 어느 州에나 있으나 그 자치단체가 성립하지 않은 지역도 있다.

Township은 중부 대서양 연안의 주 및 중서부 주에만 존재하며 비법인인 Town은 잉글랜드 지역에만 존재한다. 그리고 Special District는 전국에 산재한다. 대체로 도시지역에는 City, Village가 있고 농촌지역에는 Town, Township이 있다.

셋째로 미국 지방제도의 계층구조도 역시 지역적으로 다양하다.

County와 Township 및 Town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County가 상급 광역단체의 성격을 가지나 County와 Township 사이에는 적절한 기능분담을 통하여 양자가 모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비하여 Town이 존재하는 뉴잉글랜드 지방에서는 County의 기능이 약화되고 Town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반대로 Township이나 Town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남부 및 서부의 여러 주에서 County는 자치단체와 함께 기본적인 지방단위로서 광범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넷째로 미국에 있어서 지방단체의 구역은 대부분이 우마차 시대에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 규모가 작고 재정이 빈약하며, 도시권에 수많은 자치구역이 분립되어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켰다.

이러한 소규모의 지방구역으로서는 경제사회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이 경주되었다.

- 1) Township 등 소규모의 지방단체가 처리하던 사무를 보다 큰 규모의 County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하는 이른바 사무의 상향 이관방식
- 2) 지방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증가시키는 방식
- 3) 기존 지방단체의 구역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특정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특별구역(Special District)을 설립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1), 2)의 방법들은 소규모의 자치구역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중앙집권화의 경향을 초래하였으며 3)의 방법은 오히려 구역의 혼란을 가중시켜 왔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금번 마포구의회에서 직접 다녀온 로스엔젤레스시의회의 자치제도와 로스엔젤레스 PEUNTE HILL 쓰레기 매립장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로스엔젤레스 시 의회】

1. 로스엔젤레스 시 의회 본회의장 방청  
오전 10시 개의된 본회의에 참관할 수 있으며 우리 연수단 일행은 선진의회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로스엔젤레스 시장인 RICHARD J. RIORDAN의 환영을 받아 접견실에서 연수단 일행과 상견례를 한 후 방문기념 사진 촬영을 하였다.

시의회 자원봉사자의 안내를 받아 본회의장 방청석에 착석하니 로스엔젤레스 의회의장(존 웨로라)이 우리 연수단을 환영한다는 인사말에 이어 우리 연수단 일행이 일어나 답례로 목례와 손을 흔드니 방청나온 시민이 박수로 화답하였다.

본회의장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

있으며, 본회의장 2/3가 방청석으로 350명의 방청인이 들어올 수 있으며 의원들의 의석과 방청인석의 높이는 동일하고 양쪽을 가르는 칸막이도 없으며 방청석 맨 앞 중앙에 발언대가 있어 회의 마지막 10분은 언제나 주민 발언시간으로 주민들은 안전은 물론 다른 시정 제안에 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방청인 중 청각장애인이 많을 경우에는 수화자도 동원된다고 한다.

본회의 장면은 로스엔젤레스 지역 유선방송을 통하여 TV로 생중계되며 전화로도 진행중인 회의상황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로스엔젤레스 시의 지방자치는 쉽게 설명하자면 주식회사에 비유할 수 있다. 주민은 주주, 의회는 이사회, 단체장은 고용사장으로 보아 의회가 고용사장인 단체장에게 군림하려 하지만 주주(주민)들 앞에선 의회의 모든 것을 내보이고 있다. 우리 연수단 일행도 마포구의회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다루어주어 주민의 관심을 유도해 내야 한다고 본다.

## 2. 로스엔젤레스 시 연혁

로스엔젤레스시(The City of Los Angeles)의 정착주민은 처음에 14가구의 44명으로 시정부가 수립된 시기는 1781년 9월 4일이었다.

로스엔젤레스시란 명칭은 그 당시 Alta California의 주지사였던 Colonel Felipe-De Neve에 의해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

로스엔젤레스시는 1850년 4월 4일에 인근 일부지역이 합병되었고 당시 인구는 1,610명, 72km<sup>2</sup>이었다.

현재는 인구가 350만이 넘으며 면적은 1,200km<sup>2</sup>에 이른다.

## 3. 시정부의 형태

1925년 7월 1일 이후 발효된 후리홀드 현장(Freeholders Charter)에 의해 시장, 의회위원회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시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전지역을 15개 지역으로 나누어 지역을 대표하는 15명의 시의원을 주민이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시장, 통제관, 시대리인도 4년마다 주민이 직접선거로 선출하지만 시공무원과 직원은

시 공채규정에 의거 채용한다.

정부기구는 39개 局과 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구성원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 General Managers들이나 자문 또는 통제위원회(Board of Commissions)에 의해 주도된다.

공공업무위원회(The Board of Public Works)의 구성원은 유일하게 종일 근무를 하며 급료는 법령에 따라 지급된다. 대부분의 시민위원회 구성원은 매 회의마다 50달러를 받으며 공항, 항만, 수도 동력위원회의 구성원은 매 회의마다 50달러를 받고 월 250달러를 초과해서 받을 수 없다.

## 4. 시 정부기관

### 가. 시장(Mayer)

시장은 시전역을 선거구로 하여 선출된 시정부의 장이며 임기는 4년이고 다른 시관료들보다 시정 업무에 관한 책임이 막중하다.

시장은 집행자로서 의회에 건의하고 권고하며 의회에서 통과된 법령을 거부하는 거부권과 법령의 시행을 공포하는 공포권을 가진다.

시장은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며 예산의 전용과 이용을 승인한다.

시장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 관료들이나 위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할 수 있고 시정부의 부서간 업무를 조정하고 관료나 직원의 불만을 받아 검토 분석한다.

### 나. 시 의회(City Council)

최초의 의회는 7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1850년 7월 3일 첫 의회가 열렸고 현재는 1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회는 현장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시 관리기관이며 시장을 승인하고 거부하는 법령의 제정, 선거와 세금정수를 의결하며 계약을 승인하고 교통법규를 제정한다. 시장에 의해 제출된 예산안을 수정하거나 의결하고 시장의 공무원 임용을 인준하거나 거부하고 현장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위원회나 공무원들의 의무를 규정한다.

도시의 급속한 성장으로 지역주민의 생활과 복지에 영향을 주는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그것은 교통문제, 하수,

쓰레기 처리, 환경문제, 소방과 치안문제, 홍수통제, 공공시설관리 등 많은 문제들에 관한 것을 해결하는 책임은 15명으로 구성된 의회에 있다. 회의는 시청사내에 의회 의사당에서 정기적으로 주 3회(화, 수, 금) 오전 10시에 개회되며 시민에게 공개된다. 시민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의원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고 해결을 요청하기 때문에 의원들의 책임은 일반 시민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무겁다. 또한 시정부의 기능이 입법, 사법, 행정으로 엄격히 분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그들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들을 조정해 달라는 요청을 끊임없이 받는다.

의회는 입법분석실의 장(The Chief Legislative Analysts Office)으로부터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데 이곳의 직원들은 의회가 입법 통과시 요청할지도 모를 정보를 모으기 위해 여러 분야의 위원회와 함께 노력하게 된다.

다. 의회위원회(Council Committee)

시 현장에 의하여 의회는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좋은 해결책을 찾아 보고자 15개의 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의장의 권한에 의거 구성되고 의원 각자는 한 위원회의 장이 되며 다른 두 개의 위원회의 구성원이 된다.

특별위원회는 그것을 구성한 기관의 요청에 따라 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으로 개회되는데 보고서나 청문회를 통해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얻어 서명날인한 문서로 의회에 제출할 권고문은 시 사무장이 요약 작성하여 개개의 위원과 집행기관 그리고 주민에게 배부된다.

5. 시 행정조직

《시 담당관 City Administrative Officer》

시 담당관은 시장과 의회의 재정고문이며 시장과 의회 양쪽에 직접 보고한다. 시장과 의회를 위해 광범위하고 다양한 시 운영문제를 심사하고 연구하며 예산편성에 도움을 주고 편성된 예산의 운영을 지휘하고 그 프로그램과 기준을 개발한다.

모든 노동관계 계약을 협상함에 있어 대표자 역할을 하며 각 부서에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한다. 위기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재난대비 활동과 그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시 대리인》

로스엔젤레스 시의 대리인이며 법적 고문이다. 그의 역할은 시당국, 국회 모든 공무원과 시정조직 각 부처에 미치며 시 대리인이 수도 동력국, 항만국, 공항국, 시공무원퇴직관리부, 소방·경찰공무원연금관리국의 자금통제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 연방, 주정부의 법률, 헌장, 법령을 해석하고 그 견해를 내놓을 수 있고 법령의 형식과 계약의 적법성 여부를 조사하며 모든 법정에서의 재판 등 법적행위에 관해 시와 그 위원회 그리고 공무원들을 대표한다. 정식으로 제출된 민사청구와 소송을 변호함에 있어 노동자 보상 호소위원회와 노동자의 정보청구소송에 관련된 모든 법정에서 시를 대표한다. 주법률과 시법령을 위반한 모든 경범죄를 기소하는 법적 권한도 갖고 있다. 또한 연방의회와 주입법부의 각 위원회에서 시의 변호사 역할을 한다.

《시 사무장 City Clerk》

시의회의 사무장으로서 모든 회의록을 보관한다. 공문서와 의사록을 보관한다. 다른 부서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의 모든 소유권 기록을 보관한다. 모든 시 선거를 관리한다. 직원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자이며, 모든 사업체들과 그 세금 관계를 관리한다. 경찰과 소방 통행증을 관리한다. 의회와 시민을 위해 특별설명회를 열며, 의회에 특별 행정적·인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든 부서에 기록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를 상대로 한 모든 정식 청구를 받아 기록한다.

《통제관 Controller》

통제관은 선거로 선출된 공무원이며 시의 감사관이고 학계공무원의 장이다. 독립부서인 항공, 수도, 동력, 항만부서를 포함해 시의 각종 부서와 모든 공무원들의 회계를 총감독한다. 의회가 승인하는 회계

시스템의 방법과 적용을 규정하고 모든 영수증과 돈의 지출을 기록하고 감시한다. 직원들이나 계약자, 매도인에게 돈을 지급하기 앞서 비용에 대한 감사와 승인을 한다. 허가받지 않은 목적을 위해 당좌대월이나 지출을 함으로써 돈을 유용하게 하는 것을 방지한다. 중앙에서 봉급 명부를 마련하고 단체보험, 의료서비스, 그밖에 다른 자발적 활동에 드는 비용을 기록한 봉급 공제액 기록부를 보관한다.

통제관의 그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공식적인 계약의 관리자이다. 공식적인 재정보고서를 시와 주 통제관부에 제출하고 월, 년 재정보고서를 시장과 의회에 제출한다. 현장에 의거 통제관은 시장에게 평가된 시세입(재산 세입은 별도)을 제출하며, 또한 시세의 수치를 의회에 보고한다. 모든 부서의 내부감사는 통제관에 의해 이루어지며, 감사보고서는 각 부서의 장, 시장, 시의회에 제출되며 시민들도 이 보고서를 볼 수 있다.

《주요 시 행정조직》

노인복지국, 공항관리국, 동물관리국, 건축물관리국, 문화국, 환경국, 소방국, 서비스국, 항만국, 주택보존개발국, 정부국, 도서관, 행사장관리국, 소방·경찰 연금관리국, 인사국, 기획국, 경찰국, 공공업무담당국, 체육·공원국, 사회복지국, 전기통신국, 교통국, 지역사회개발국, 수도동력국, 시공무원퇴근관리국, 시윤리위원회, 여성복지위원회, 고용관계규정위원회, 인간관계위원회

【로스엔젤레스 PEUNTE HILLS 쓰레기 매립장】…… 방문안내자 : 정문섭 박사

○개 요

- 연 혁 : 1962년 매립개시 이래 현재 L.A COUNT의 주 매립지로 이용중
- 위 치 : Whittler L.A COUNT
- 지 형 : 완경사의 산허리를 이용한 반곡간 매립 형태
- 면 적 : 800Acres(약 367만평)정도로 미국 서부 최대 매립지
- 처 리 량 : 1일 12,000톤(주정부 인가량)
- 운 영 자 : L.A COUNT 연합 지역

○PEUNTE HILLS 매립지의 특성

- 1962년 매립 개시 이래 약 3개 권역으로 확장된 미국 서부의 최대 매립지로
- 매립방법이 Cell 위생매립방식으로 매일 복토가 충실하며,
- 매립가스 재활용 분야 역시 가장 주도적으로 판단됨.
- 기후 여건상 침출수 처리시설은 별도로 가동하지 않으나 사면부 조경, 지하수 오염감시 등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으며,
- 매립 완료된 구역은 승마, 오솔길 등 주민에게 개방되어 있어 폐기물 매립지로서의 교과서적인 매립지임.

○기반시설 현황

○폐기물 반입시설

- 계량시설 4기 운영(주정부가 승인한 1일 반입량을 초과하지 않음)
- 계량시설에 방사선물질 반입점사를 위한 소형검지기 운용

○매립가스 포집 시설

- 포 집 량 : 약 20,000SCFM 정도로 발생량의 90% 정도로 추정
- 포집방식
  - ┌ 주 포집방식 : 수평 포집방식 (총 연장 약 38.4km 정도)
  - └ 보조포집방식 : 수직 포집방식 (사면부 발생량을 포집하기 위해 수평 포집방식의 보조로 설치)

-수평 포집방식 특성

- 수평 포집관을 일반 유공관형에서 관형이 다른 2개의 관을 삽입 시공하는 방식으로 변경 시행중(1993년 이후)
- 수평 포집관을 매층마다 쓰레기매립 전 복토면 상부에 시공(별도의 터파기를 시행하지 않음)

○매립가스 수송 시설

- 수송방식 : 매립지 사면 경계부를 따라 순환형으로 설치된 헤더를 처리시설에서 강제 흡입방식
- 수송관과 포집관 연결
  - 수평 포집관 시공후 헤더에 직결 방식

- 헤더 연결부분에 가스 추출 압력 및 온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 설치

-수송관 특성

- 재질 : 내자외선용으로 도료에 의한 피복 PVC(청색) 및 C-PVC 사용

- 기온의 차가 크지 않아 신축이음 등에는 비중을 두지 않고 설치

-용축수제거 시설

- 헤더관을 저점(LOW POINT)에서 용축수를 배제용 관을 설치
- 배제된 용축수를 매립지 내부로 재순환하지 안혹 저류조에 저수후 외부 처리

○매립가스 처리 시설

-흡입설비

- 흡입기 : 다단형 터보 블라보
- 흡입조건 : 공기량이 1~3% 정도, 매탄량의 40% 이상

-연소설비

- 운전조건 : 1,500° F내외
- 연소조건 : 50ppm 이하 as Hydro Carbon(주 연소배출허용기준 만족)
- 연소기 : 폐쇄형 부바조정 형식 (Enclosed Flare Stack)
- 연소용량 : 1,000SCFM 16기 및 6,000SCFM 1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저하시키기 위하여 대용량으로 교체중)

-발전설비

- 발전방식 : 주 스팀터빈 방식(안정적 운영을 위해 초기 가스터빈을 스팀터빈방식으로 교체)
- 발전용량 : 50MW(약 십만가구분)
- 경제성 : 연간 약 450만불 정도 수입

○운영관리 현황

○폐기물 매립분야

- 매립방식 : 위생매립(Cell) 방식에 의해 시행
- 매립고 : 1단 매립고는 약 6m 내외
- 복토

- 복토재 확보 : 단계별 확장계획에 의거 다음 공구에서 채취, 활용(다음 공구 매립량 증가 등 이중 효과)

- 시행현황
  - 상면부 : 약 45cm 정도
  - 사면부 : 약 20cm 정도

○사면 관리 분야

- 축조방식 : 폐기물 매립전 외곽에 범면 재방선 축조(양질토사 이용)
- 축조고 : 폐기물 매립고에 따라 시행 (평균 6m 내외)
- 특징 : 외곽재방과 재방 사이에 반입도로를 매단별로 확보
- 유지관리 : 재방 안정후 사면부까지 수림대 조성

○기타분야

- 슬러지 매립
  - 처리량 : 1일 약 1,500톤
  - 매립방식 : 토사와 1:5 비유로 혼합 매립

-아스팔트 잔재물 처분

- 우기시 차량진입 지지재 등으로 활용키 위해 별도 관리
- 기후 여건상 우기는 극히 짧은 강우시 매립편의를 감안
- 정원 잔재물(나무 등) 처분
  - 파쇄하여 복토재에 혼합 사용중
  - 퇴비화 준비중

-안정관리

- 하부지반이 풍화암 등 견고하여 별도의 지반 안정관리는 하지 않음.
- 처수취트 미설치 지역 등의 지하수 오염감시를 위해 감시정 설치 운영

○연수단 평가

- 마포구에는 기존의 난지도 매립장이 있어 연수단이 관심이 큰 바,
- 난지도와 PEUNTE HILLS 매립장 비교하여 앞으로의 난지도 관리 운영방안 모색
- 수도권 매립지의 효율적이고 위생적인 운영방안 모색
- 매립지에서의 매립가스 및 정원 잔재물(나무) 등의 재활용 방안과 슬러지의 처리방안 모색
- 모두를 위한 환경오염 방지 감시 철저히

캐 나 다 편

【캐나다의 지방자치제도】

캐나다는 1497년 이탈리아 탐험가 Cabot에 의해 처음으로 발견되어 역사의 시작은 1534년 프랑스가 캐나다를 점령했을 때부터이다.

1763년 Treaty of Paris(파리협약)에 의하여 캐나다는 대영제국의 소유가 되었고 1876년 7월 1일 독립하였다.

캐나다의 국토의 총면적은 997만평방미터이고, 인구는 2,700만명이다.

국가 형태는 연방국가로 10개 州와 2개의 연방직할령이 있고 정체는 연연방의 일원인 입헌군주국이고 국가원수는 영국국왕이다.

영국국왕이 임명하는 총독이 형식상으로는 국정을 총괄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총독은 권한은 상징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실제로는 연방정부의 수상이 정치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다.

지방제도는 각 주마다 인구나 자연조건뿐만 아니라 식민지 경험, 이주자의 출신지에 영향을 받고 있다. 약 4,40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유형, 기능, 내부조직이 상이하므로 여기서는 지방행정 단위의 편성과 자치단체의 조직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지방행정 단위의 편성

- 가. 계층구조
  - 2층제 : 온타리오(Ontario)州와 퀘백(Quebec)州의 구조
  - 1층제 : 위의 2개주를 제외한 나머지 州

나. 자치단체 : 개괄적인 구분으로 도시적 자치단체와 농촌적 자치단체로 구분된다.

- 도시적 자치단체 : City, Town, Village

- 농촌적 자치단체

: 온타리오주에서는 "Township", 퀘백주에서는 "Parish", 기타 다른 주에서는 "Municipal District"라 한다.

다. 광역적 행정단위 : 광역적 행정단위로는 County가 있으며 온타리오 및 퀘백주에 설치되어 있다.

라. 특별한 대도시 자치단체

대개 2층제의 계층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온타리오주의 토론토시와 마니토바주의 위니펙시에 특별한 대도시제가 설치되어 있다.

- 토론토 도시권 자치단체(Municipality of Metropolitan Toronto)
- (Metropolitan Corporation of Greater Winnipeg)

2. 자치단체의 조직

가. 기능

자치단체의 기능은 각 주의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도로, 교량, 상·하수도, 공중보건의위생, 레크레이션, 농림어업, 경찰, 소방, 교육, 병원, 사회복지, 주택, 도시재개발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예외적으로 뉴펀드랜드州에서는 주정부가 경찰, 소방업무를 담당한다.

나. 의회와 장

의원의 수는 소규모 자치단체의 경우 3명에서부터 대규모 자치단체는 50명까지 있으나 대개는 7~20명 정도이다.

의원의 임기도 1년에서부터 3년까지 단체마다 다르고 임기 2년 이상의 단체에서는 의원 정수의 1/2 또는 1/3을 매년 개선하는 단체도 많다.

長은 Mayer(시장) 또는 Reeve(읍면장)이라고 불리며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의장의 임무를 시행하고 정치적 지도자로서 정책을 입안하여 자치단체를 대표한다.

다. 내부조직 : 내부조직에는 4가지 유형이 있다.

○ 의 회 - 위원회형(Council-Committee)

의회에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가 설치되어 위원회가 사무조직을 지휘하고 구체적 행정집행을 담당하는 형으로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방식이다. 위원회의 수는 통상 6~7개가 되며 의회 의장은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 의 회 - 지방행정관형(Council-Commissioners)

공선된 의회가 그 구성원외의 인물중에서 행정전문가를 지방행정관으로 임명하여 행정사무를 담당시키고 있다. 지방행정관 1명 내지 수명이 행정사무 전

반에 걸쳐 지휘감독하며 예산을 집행하고 정책적인 사항은 의회에 조인한다.

○ 의 회-관리관형(Council-Manager)

이 방식은 의원수가 10명 이하의 작은 자치단체에서 채택하고 있다.

의회가 사무집행 부분의 장을 임명하고 의회는 정책을 결정하고 관리관은 집행을 한다. 의회는 조례의 제정, 예산의 결정, 관리관의 임면을 한다.

관리관은 예산안의 작성, 경비의 지출, 사무부분의 관리, 사무직원의 임면과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의 작성, 정책의 제언 등을 한다.

○ 의 회-이사회형(Council-Board)

의장과 4명의 검사관(Controllor)이 자치단체의 전 구역에서 공선되어 이사회를 구성하며 이사회(Board of Control)의 장은 의장이 맡는다.

이사의회의 구성원은 의원이 되며 이사회와 의회의 관계는 州법에 그 권한 배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이사회는 정책형성을, 의회는 심사승인을 한다.

이 방식은 온타리오주의 도시적 자치단체에서 채택하고 있다.

【토론토시 의회】

1940년대까지 토론토 지역에는 13개의 자치단체가 구성되어 각각 독립적인 행정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제2차 대전후 급격한 인구증가와 도시화의 추세는 중심도시인 토론토시(City of Toronto)로부터 외면적인 확산을 가져와 이로 인해 주변 자치도시는 많은 도시문제를 알게 되었다. 급증하는 도시 기반시설의 정비 필요성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대처할 능력이 없는 주변자치단체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온타리오 자치위원회(The Ontario Municipal Board)에 호소하게 되었다. 지방자치문제에 관한 준사법적·행정적 권한을 가진 주 정부 임명기관인 자치위원회는 1950년부터 수많은 공청회와 토의를 거친 뒤 1953년 1월 13개 자치단체에 공통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토론토 권 연합정부 설치를 제안하였다. 이 제안에 따라 온타리오 주정부는 1953년 4월 토론토

연합정부법(The Municipality of Metropolitan Toronto Act)을 제정하여 이른바 토론토 방식이라 불리는 광역행정 체제인 메트로 토론토시가 형성되었다.

1. 개 요

토론토시는 온타리오 주의 수도이며 시 전체의 총 면적은 625km<sup>2</sup>이며 인구는 약 230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토론토의 지방제도는 6개의 기초자치단체 즉 City of Toronto, City of North York, Borough of Scarborough Borough of York, Borough of East York과 광역자치단체인 메트로 토론토시(The Municipality of Metropolitan Toronto)의 2층 구조를 이루고 있다.

2. 행정조직

메트로 토론토 시의 행정조직은 각 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의원으로 구성된 의회를 중심으로 조직된 행정위원회형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의회는 28명의 시의원과 6명의 시장으로 총 34명으로 구성되며 의원의 임기는 3년이다. 시의원은 6개의 시를 28개의 Ward로 나누어 28명을 선출하고 6개의 시에서 시장선거를 실시하여 6명의 시장을 선출한다. 의장의 선출방식은 당초는 임명제였으나 2기부터 의회에서 선출하는 선임제를 채택하고 있다.(의원이 아니더라도 선출가능) 의원이 의장에 선출될 경우 의원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출신지에서 당해 의원을 보선하며 의장은 각 위원회의 구성원이자 메트로 토론토시의 장이 된다. 의원의 선출방식은 각 구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일종의 간접선거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현재 정부는 직접 공선을 제안하고 있다.

의회에는 집행위원회와 6개의 상임위원회가 있고 독립적인 행정기관으로서 메트로 폴리탄독립학교위원회(The Metropolitan Separate School Board)와 60여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다. 집행위원회는 14명으로 구성되며 일반적인 행정집행을 관장한다. 전체 시의회회의는 2주에 한번씩(수요일), 상임위원회회의도 2주에 한번씩 개최되나 역시 위원회별로 일정이 고정되어 있다.

사회복지국, 공원·재산국, 공공사업국, 도로교통국, 계획국, 관리서비스국, 법무국, 인



사국, 서기국, 회계검사국, 재무국

3. 토론토시의 법적 지위

토론토시는 6개의 자치단체로 구성되지만 대개의 경우 단일적인 시로 간주되며 The Department of Municipal Affairs Acts 및 The Ontario Municipal Board Act에서도 시로 간주되어 있다. 따라서 토론토는 Ontario주의 수도이면서 주립의 Count와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 메트로 토론토의 법적 성격은 어디까지나 자치단체 연합으로서 특정한 대도시적 행정사무에 관해서만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중앙정부와의 관계

캐나다는 연방국가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연합정부의 관할이 아니고 주정부의 창조물이다. 따라서 연합정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관여는 원칙적으로 배제되고 있으며 주정부에 의한 통제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 자치단체의 활동은 주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여 자치단체의 자유를 제한.
- 재정적인 통제
- 자치단체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주민의 불복신청이 있을때 이를 심사
- 옴부즈만 제도를 설치하여 자치단체의 행정을 통제

5. 토론토시의 장의 지위

메트로 토론토 의회의 의장은 시의 최고 집행책임자인 시장이 된다.

시장은 각 상임위원회의 구성원이 되나 회의에서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고 의장으로 선출된 경우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6. 토론토시의 재정

메트로 토론토는 온타리오 주법하에서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 재정으로는 주로 각 자치단체의 분담금, 주의 보조금, 각종 사업수익으로 균형예산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메트로 토론토는 직접적인 과세권이 없고 재정운영에 있어서도 주정부의 규제를 많이 받고 있다. 그 예로서 온타리오 자치위원회가 자본지출 및 특정사업 기획의 사전승인, 기채 및 기채한도를 관리하고 있고 지방세의 과세기준을 결정하는 과세평가가 주정부에 속해 있다. 그리고 주

보조금에는 조건부 보조금이 많고 각 자치단체의 재정조정은 주 정부가 담당하고 있다.

[캐나다 Main Sewage Treatment(METRO WORKE 하수처리장)]

1. 하수처리장 일반 현황

- ..... 방문안내자 : CORDELL W. SAMUELS
- 시설용량 : 81.8만톤/일(유입하수량 80만톤/일)
- 처리인구 : 125만명
- 처리면적 : 40.5ha
- 차집관거 : 213mile(341km)
- 시전체의 종합적인 슬러지 시스템이 있음.

2. 처리시설물별 용량

- 유입펌프장 : 2개
  - Main Pumping Station : 펌프수량 10대, 용량 150만m<sup>3</sup>/일, 바스크린 6개
  - Mid Toronto Pumping Station : 펌프수량 5대, 용량 136만m<sup>3</sup>/일, 바스크린 없음
- 침사지 : 16지
  - 포기침사지 : 10지
  - 비포기침사지 : 6지
  - 냄새제거를 위해서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침사지 이전에 투입(0.3ppm)
- 최초 침전지 : 12지
  - 용량 : 113,000m<sup>3</sup>
  - 평균체류시간 : 2.5시간
  - 바스크린 : 14개
- 포기조 : 9지
  - 용량 : 160,000m<sup>3</sup>
  - 평균체류시간 : 3.5시간
  - 송풍기 : 8대(54만m<sup>3</sup>/시간)
  - 공기공급량 : 10,85Airm<sup>3</sup>/하수m<sup>3</sup>
  - 평균 D0농도 : 4.4ppm
- 최종 침전지 : 9지
  - 용량 : 105,000m<sup>3</sup>
  - 평균체류시간 : 2.36시간
- 탈인설비
  - 약 품 : 염화제이철(Fetious Chhloride)
  - 저장용량 : 590m<sup>3</sup>
  - 투입율 : 7.13ppm
  - 투입위치 : 포기조와 최종침전지 사이에 투입을 하였으나 현재 최초 침전지 이전으로 투입위치

변경을 검토중임.

○ 염소소독

- 투입율 : 3.9ppm
- 잔류염소농도 : 1ppm

○ 소화조 : 12지

- 체류시간 : 9.8일
- 소화율 : 37%
- 가스발생량 : 63,600m<sup>3</sup>/일

○ 가압부상농축조 : 10지

- 고형물부하율 : 9.8Kg/m<sup>3</sup>/일
- TS농도 : 유입 0.6% → 유출 5.5%
- Polymer 투입량 : 254kg/일
- 분리액농도 : 70ppm

○ Thermal Conditioning(슬러지 개량) : 7지

- 유입슬러지량 : 3,500m<sup>3</sup>/일
- 유입슬러지농도 : 3.0%
- 유출슬러지농도 : 7.55
- 슬러지개량온도 : 85℃

○ 진공여과기 : 6대

- 유입슬러지량 : 2.6톤/시간
- 유입슬러지농도 : 3.0%
- 고형물부하율 : 8.9kg/m<sup>3</sup>/시간
- Polymer 투입량 : 584kg/일
- 평균생산량 : 174.8톤/일

○ T벨트프레스 : 4대

- 유입슬러지량 : 7.21톤/시간
- 수리학적 부하 : 16.2m<sup>3</sup>/시간/벨트단위m
- Thermal Conditioning(개량)된 슬러지 투입
- 평균생산량 : 162.17톤/일(함수율 : 60%)

○ 원심탈수기 : 2대

- 유입슬러지량 : 3.5톤/시간
- 유입소화슬러지농도 : 3.0%
- 평균생산량 : 111.88톤/일(함수율 : 69%)

○ 소각로 : 6대

- Type : Multiple Hearth
- 소각재량 : 125.1톤/일
- 유출슬러지농도 : 7.5%

3. 처리장의 특성

○ 인제거를 위해 최종침전지와 포기조 사이에 응집제인 염화제이철을 투입하고 있으나 최종침전지 효율증대를 위하여 침사지와 최종침전지 사이에 응집제 투입을 검토하고 있음.

○ 각 시설물별로 탈취설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시설물마다 자체적으로 오존으로 탈취하고 있음.

○ 운영인원 : 430여명이 4교대로 근무하고 있음(행정 7명, 오퍼레이터 25명, 매너터너스 348명, 실험실 54명)

○ 연간운영비 : 43,286,800 캐나다 달러(톤당 처리비용 : 0.15달러)

○ 슬러지는 전량 소각하고 있으며 소각재는 매립하고 있음(소각재는 70톤/일 발생)

○ DAF(용존공기부상법)에 의한 가압부상농축조가 설치되어 있으며 고분자 응집제를 투입하여 처리하고 있음.

○ 방류수에 대한 법적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염소살균을 실시하고 있음.

수질항목	단 위	방류수질기준	현 처리수질	비 고
BOD	mg/ℓ	25이하	8	
S S	mg/ℓ	25이하	12	
T-P	mg/ℓ	1이하	0.7	
대장균군	MPN/100mg	2,000이하	250	

○ 1992~1994 운영기술진단을 실시(법으로 정하여 지지는 않았으나 환경영향평가지 프로세스진단의 필요성과 장래 질소제거 공정 용량산정을 위해 기술진단을 실시)

- 용역사 : 미국 CH2M HILL
- 하수처리장 평가 요약 : 별첨
- 용역결과 : 현 처리시설로 처리용량증대 및 방류수질 개선

(다음 페이지에 계속)

항 목	개 선 전	개 선 후
유량(m <sup>3</sup> /일)	616,000	818,000
BOD	25	8
S S	24	12
T-P	1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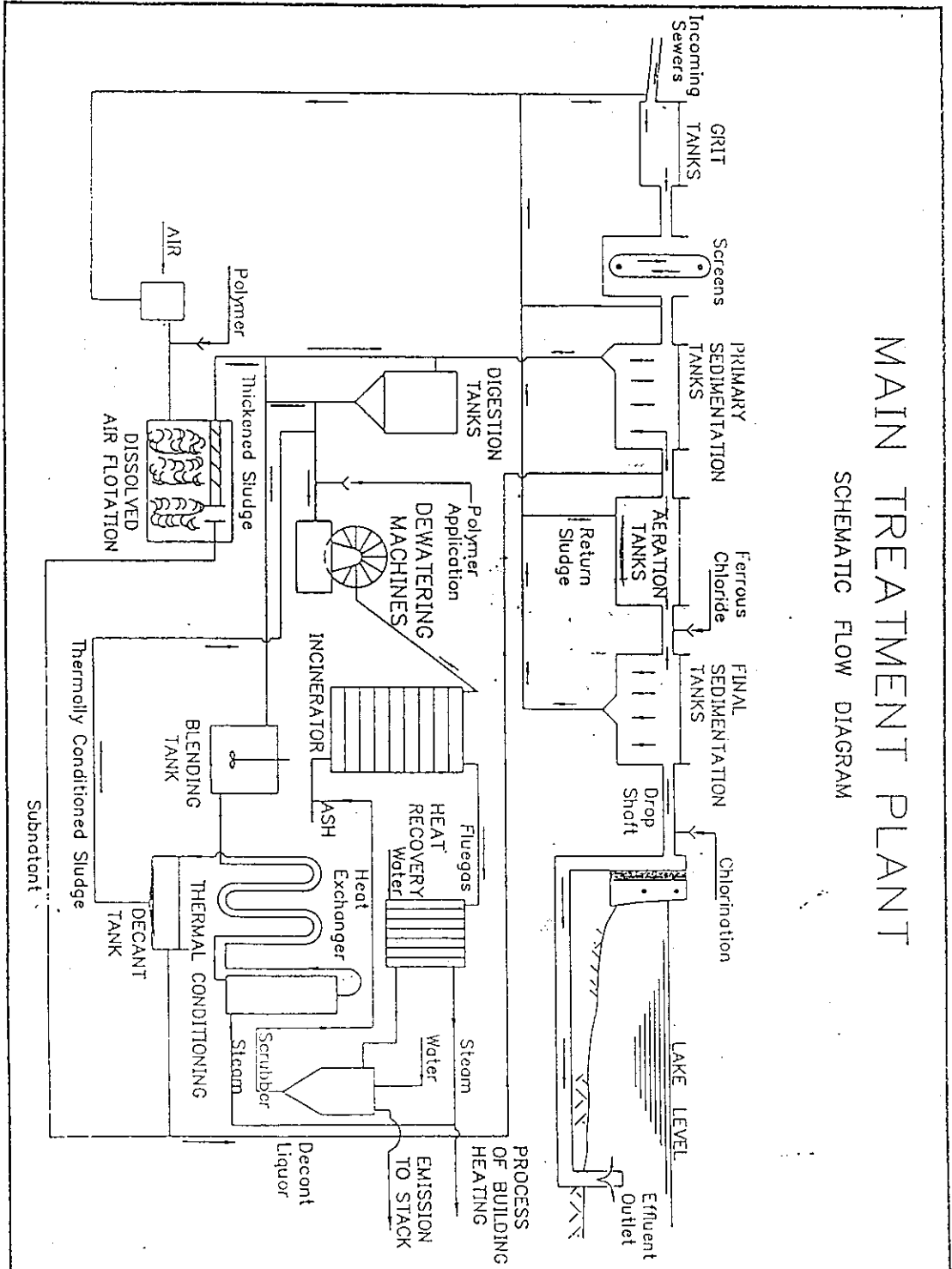
- 현재개선사항 : 반송수부하를 줄이기 위해 반송되는 물량을 억제하고 최대한 탈수시킴으로서 반송수량만큼의 하수처리 용량 증대

- 장래개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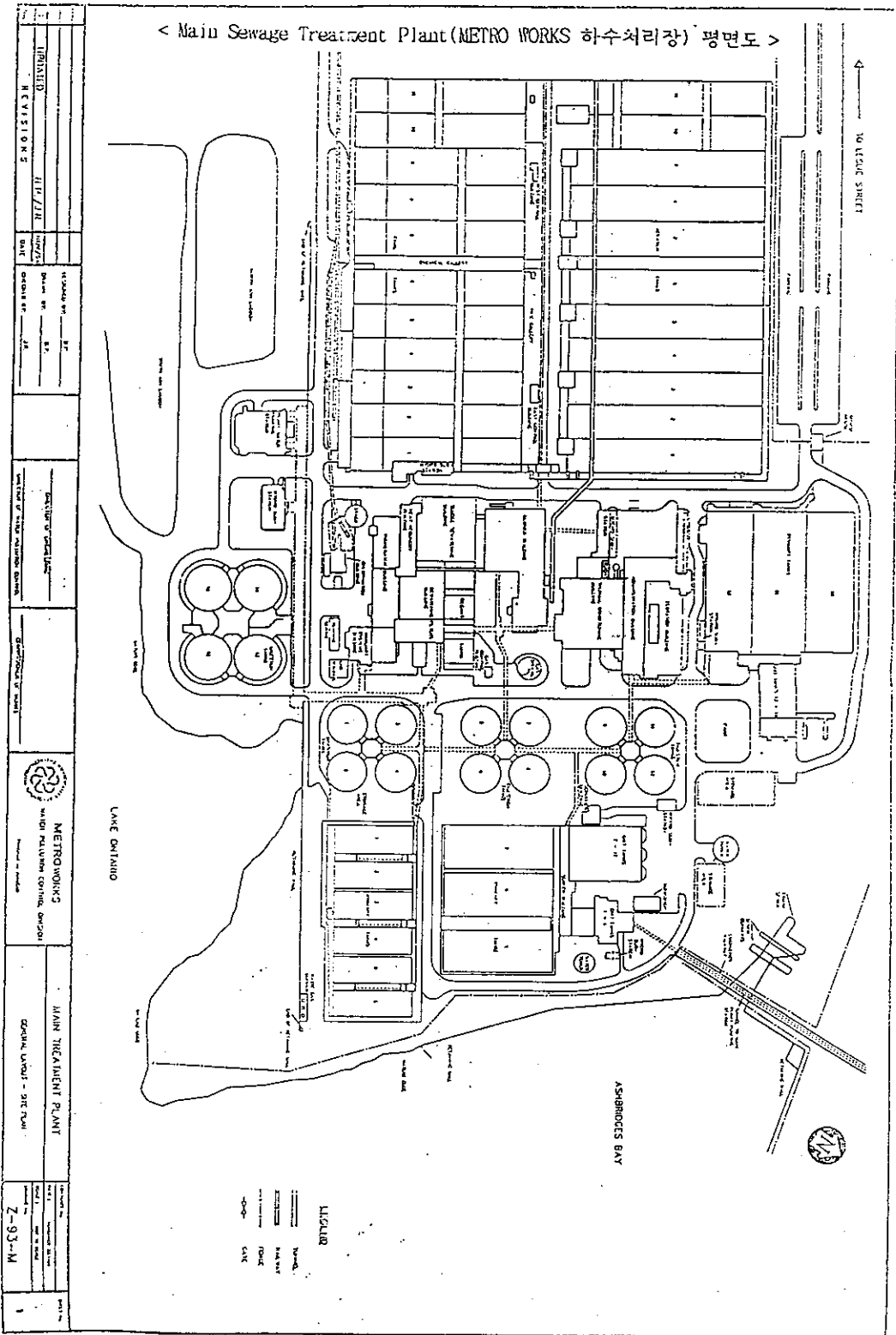
- 포기조 산기관을 FINE BUBBLE로 교체(1억 8천만 달러 소요)
- 시설자동화 : 년차별 예산투입(총소요 예산 2억 2천만 달러중 '96년 3천만 달러 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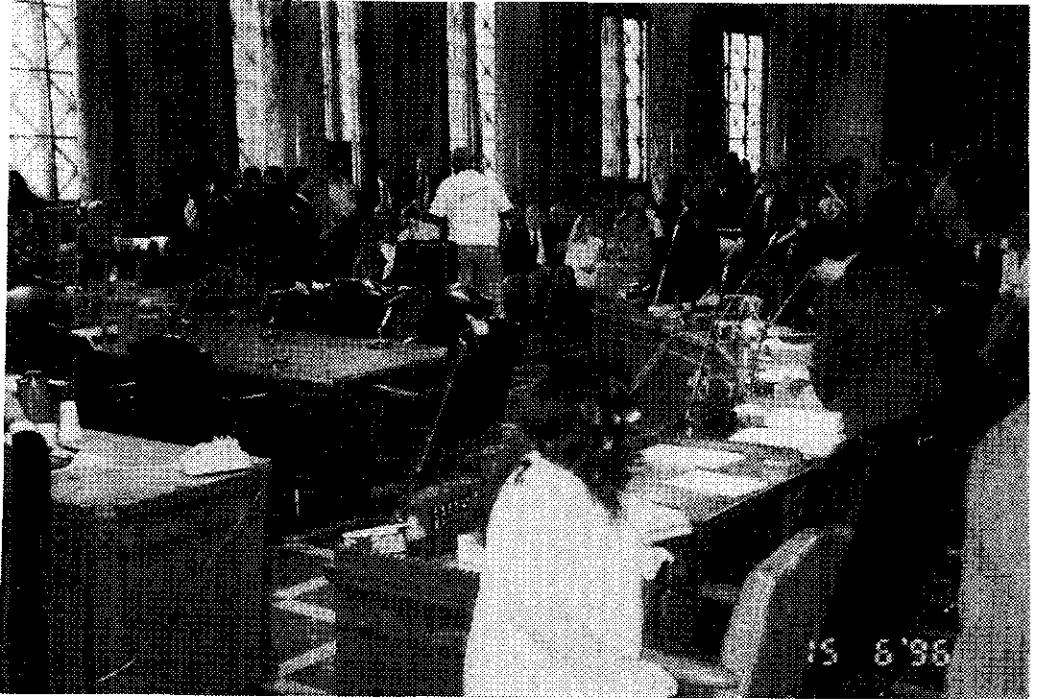
(다음 페이지에 계속)

METRO WORK 하수처리장 처리계통도



MAIN TREATMENT PLANT  
SCHEMATIC FLOW DIA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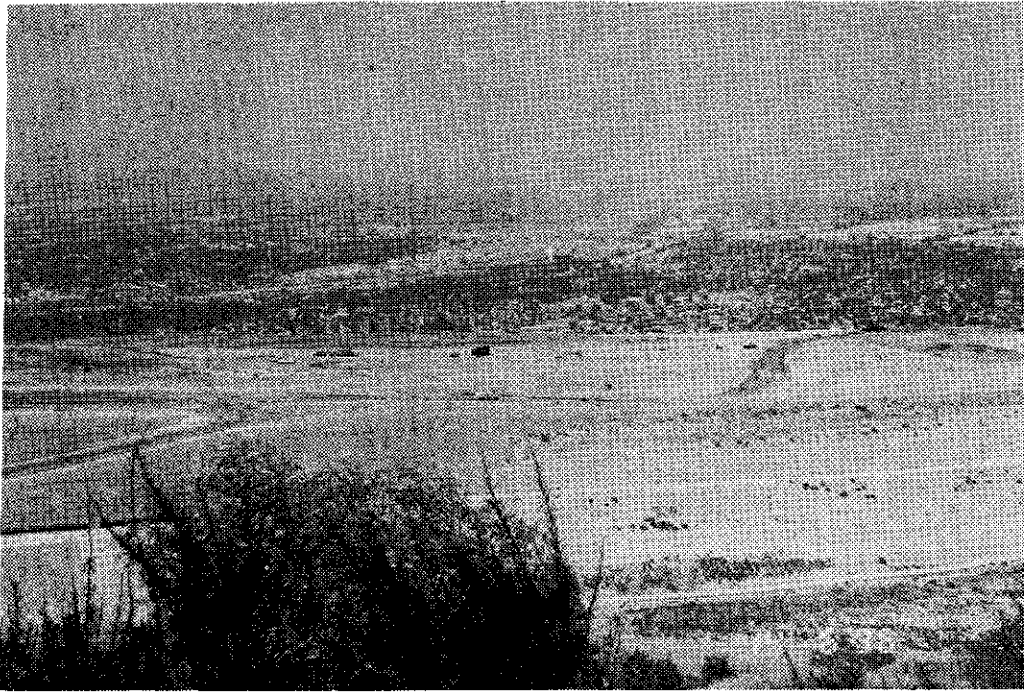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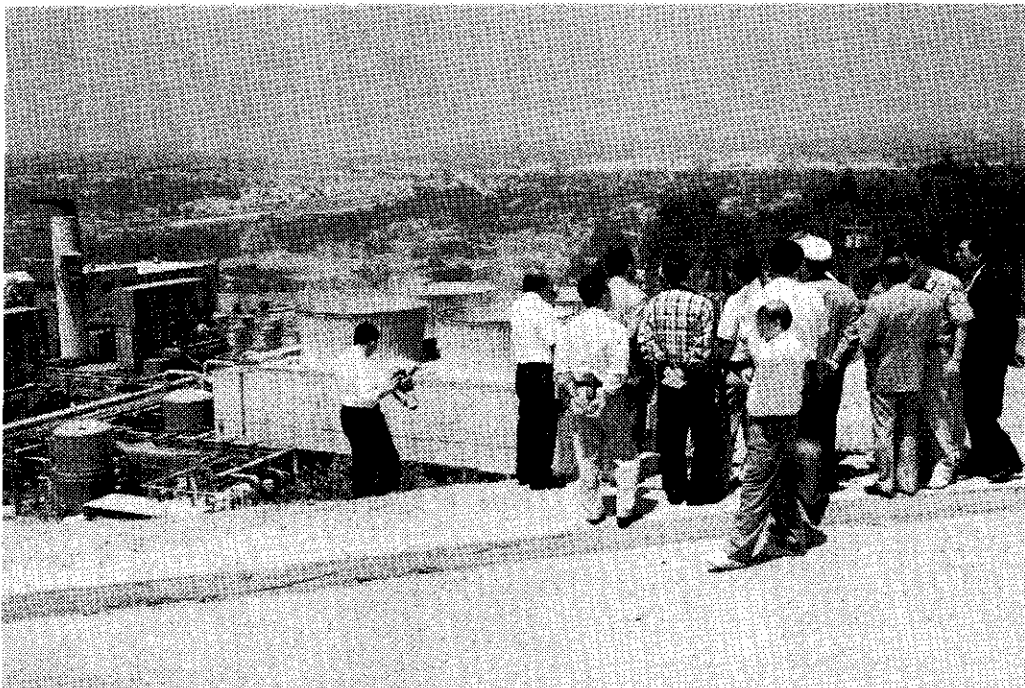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진행중인 로스엔젤레스 시의회】



【로스엔젤레스 시의회를 방문하여 시장(RICHARD J. RIORDAN)과 기념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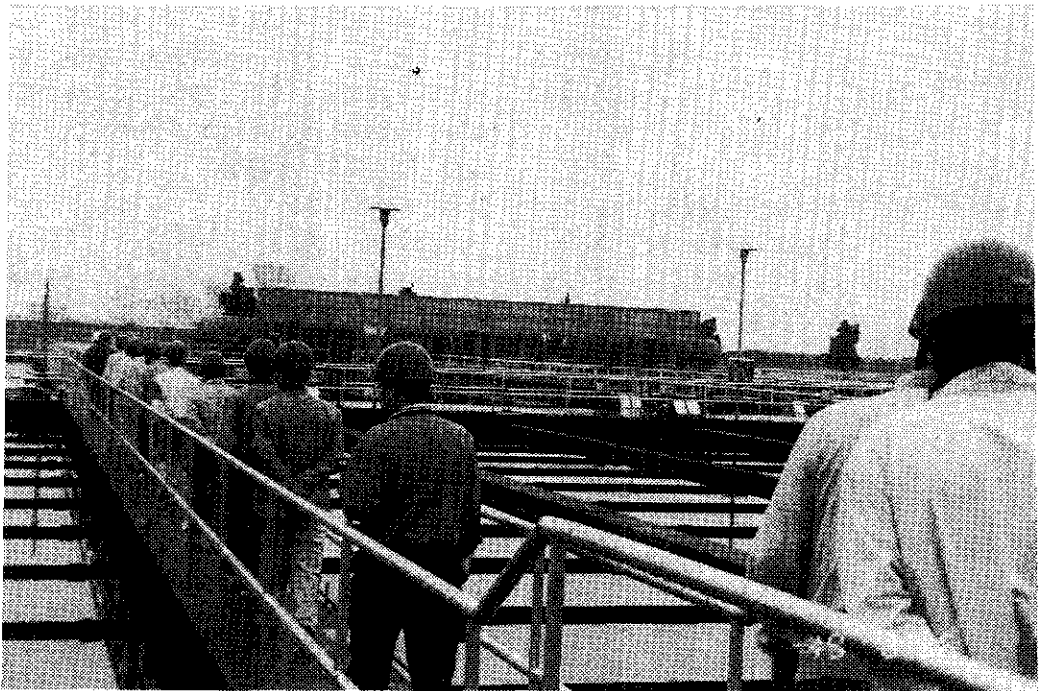
【L.A COUNTY 쓰레기 매립 현장】



【L.A COUNTY 매립장내 소각장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있는 의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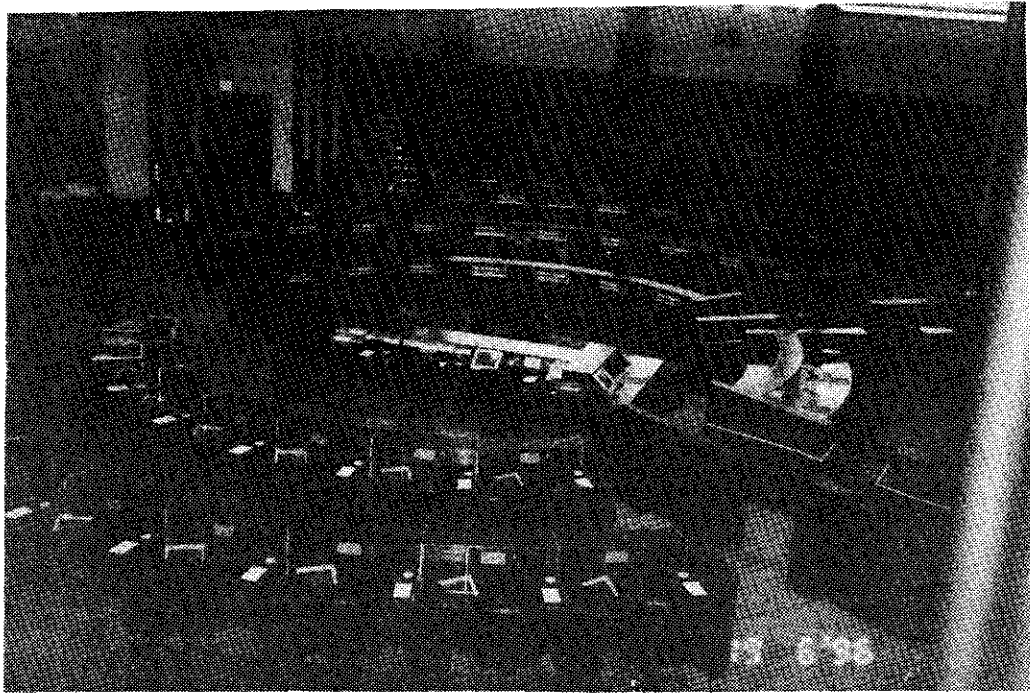


【토론토 하수처리장 침전지 시설을 시찰하는 의원들】



【토론토 하수처리장 침전지 시설을 시찰하는 의원들】





【토론토시 의회 본회의장 전경】

성산동 자동차 정비단지 이전촉구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1996. 11. 7.  
도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청원인 주소 : 마포구 성산2동 595 도시  
개발임대APT 102-216호

성명 : 한천수 외 680인

나. 소개의원 : 김유현 의원, 윤명균 의원,  
한수균 의원

다. 접수일자 : '96. 11. 6.

라. 회부일자 : '96. 11. 6.

마. 상정일자 : 제41회의회(임시회) 제5차위원회  
(96. 11. 7.) 상정의결

2. 청원요지

성산동 도시개발임대아파트 102동 216호  
한천수외 680명이 제출한 동청원의 내용은  
성산동 589번지 일대 55,900m<sup>3</sup>(약 17,000  
평)의 성산동 자동차 정비단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매연, 세차장 수질  
오염 등의 환경공해는 물론 사고차량들의

무질서한 방치, 견인차량 등의 고속 질주로  
인하여 인근 초등학교 등학교 학생들의 통  
행불편은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성 마저 높  
은 지역으로 인근 주민들은 항상 불안하고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단지를 도시외각지역으로 이전해줄  
것을 촉구하는 청원임.

3. 취지설명요지

(소개의원 김유현 의원)

청원인들의 청원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관수)

본 청원에 따른 정비단지 조성배경을 보  
고드리면, 1977. 2. 17. 도심곳곳에 산재해  
있는 자동차 정비업소를 도심외각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촉구하는 서울시장 방침에 따  
라 성산동 자동차정비단지조성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978. 11. 10. 서울시고시 제  
591호로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으로 결정고  
시되었으며, 1982. 9. 24. 건설부고시 제348  
호로 동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고시하여  
타용도로는 전용하지 못하도록 “자동차 정  
비지구 용도에 한함”으로 공부상에 표기하